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6 선고 2019가단5102812 판결 [공사대금 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19. 11. 28.

판결 선고 2020. 1. 16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220,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서울 중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. 3. 9. 주식회사 E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. 3. 16.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위회사가 위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7. 5. 2. F 주식회사(이하 'F'이라고 한다)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나머지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신축공사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계약금액 458,375,000원,공사기간 2017. 5. 4.부터 2017. 8. 25.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후 F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, 위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17. 9. 29.경 피고와 사이에 2017. 10. 25.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책임준공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7. 10. 3. F 사이에,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, 금속공사(이하 '이 사건 하도급공사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계약금액 49,220,960원, 공사기간 2017. 10. 3.부터 2018. 4. 30.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8. 5월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.

라.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7. 10. 17. 500만원, 2018.4. 4. 200만원을, F로부터 2017. 10. 18. 1,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.

마. F은 2018. 5. 16. 원고에게 '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, 동법시행규칙 제29조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'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(갑 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직불합의서'라고 한다)을 작성하여 주었으나, 위 합의서에는 원고와 F의 날인만 있고,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.

바.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8. 8. 24. 사용승인을 받았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,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49,220,960원에 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, 준공검사 직전 피고와 F의 요청으로부터 300만원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.원고는 이 사건

하도급공사대금으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700만원, F로부터 1,000만원을 받았을 뿐, 나머지 공사대금 35,220,960원(= 본공사대금 49,220,960원 + 추가공사대금 300만원 - 지급 공사대금 합계 1,700만원)을 지급받지 못하였다. 이에 원고가 F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니 F도 피고로부터 1억 5,000만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,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도 불응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,220,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판단

- (1) 우선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- (2)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불한다거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.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17. 10. 17. 500만원, 2018. 4. 4.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, 피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.
- (3)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광섭